토목건축공사업

■ 업무내용

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8.5억원 이상	17억원 이상

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1) 및 2)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초급 이상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· 재무, 건설기획,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)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나)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가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기사 나)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 ※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(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,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제외)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토목건축공사업	1,555,600원	8.5억원	200좌 (311,120,000원)	225좌 (350,010,000원)
※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				

4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「건축법」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